

우체국알뜰폰 위탁판매업체 추가 선정계획

- (선정 업체수) 통신망 구분 없이 최대 5개 업체 선정
- (참가자격) 무선재판매사업자(별정통신 2호, 4호) 중 기간통신사업자와 망임대 협정을 체결하고 미래부에 '14. 7. 31. 현재 신고*한 후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 중인 중소기업**
 - * 근거 :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(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) 5항
 - **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상 채무보증·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 제외
- (제출서류) ① 참가신청서 ② 회사소개서 ③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증 ④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⑤ '14년 상반기 재무제표 ⑥ '15. 1월부터 판매예정 요금제 ⑦ 단말기 수급 확인서(기간통신사업자 또는 휴대폰 공급업체 확인서 등) ⑧ '14. 2~7월 월별 가입자 세부내역 ⑨ 콜센터 운영현황(조직도 및 콜센터 전화번호, 근무인원 등) ⑩ 우체국알뜰폰 판매 활성화 방안
- 평가항목 및 배점표

평가항목		배점	최저기준 (※ 미충족시 선정 제외)
경영 상태 (20)	○ 재무건전성(신용평가 등급)	15	B등급 이상
	○ 2014년도 상반기 매출액	5	
사업 수행 능력 (50)	○ 경쟁력있는 요금제 출시능력	20	
	○ 단말기 수급능력	15	모델별 월 200대 이상
	○ 최근 6개월간 신규 가입자 수	15	
민원 처리 능력 (30)	○ 콜센터 보유 및 운영여부	15	
	○ 최근 1년간 민원 처리현황	15	
계		100	

□ 추진일정

- 신청서류 접수 : '14. 9. 15. ~ 26.(2주간)
-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: '14. 10월중
- 시스템 연계 및 판매준비 : '14. 10월 ~ 12월
- 판매개시 : '15. 1월중

- 붙임 1. 우체국알뜰폰 위탁판매업체 가입신청서 1부
2. 우체국알뜰폰 수탁판매 계약서 주요내용(요약) 1부.

< 첨부1 >

우체국알뜰폰 위탁판매업체 참가신청서

신청인	상호 또는 법인명칭		사업자등록번호			
	주 소		전화번호			
	대 표 자		생년월일			
	별정통신사업자 등록번호		제공역무			
참가자격	채무보증·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여부 (※ 근거 :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)					
	기간통신사업자와 망임대 협정체결 일자 (※ 근거 :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5항)					
	미래부 신고일자 (※ 근거 :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5항)					
	별정통신사업 등록일자		서비스 개시 일자			
사업자운영 현황	신용평가 등급		'14년 상반기 매출액			
	2014. 2 ~ 7월 가입자 현황					
	2~7월 신규 가입자수		7월말 유지자 수		비 고	
	콜센터 운영 현황(판매·유통·사무직종사자 등 겸임자는 제외)					
	콜센터 인원현황		콜센터 전화번호	콜센터 전화회선 수	114연결 여부	통화관리 시스템 보유 여부
	분야	인원				
<p>귀 본부의 우체국알뜰폰 위탁판매업체로 참가하고자 본부에서 정한 유의서 및 공고사항을 모두 숙지 및 동의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14 . . 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(대표) 인</p> <p>우정사업본부장 귀하</p>						

(구비서류)

구비서류 목록 및 제출양식

1. 회사소개서

- 기업비전, 연혁, 인원현황, 조직도, 사업분야, 취급상품, 실적, 사회공헌활동 등 일반사항
- 기업CI, 홈페이지 주소

2.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증

- 증빙자료 제출

3. 신용평가등급 확인서

- 증빙자료 제출
 - ※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: 「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업자(디앤비코리아, 한국신용정보, 한국기업평가 등)가 발급한 확인서
 - ※ '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, 평가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확인서만 유효함

4. '14년 상반기 재무제표

- 증빙자료 제출

5. 판매예정 요금제 제출(표준요금제, 무약정, 가입비무료)

- 기존 우체국알뜰폰 요금제와 경쟁하며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(저렴성)할 수 있는 요금제 1개
 - ※ 우체국알뜰폰 위탁판매업체로 선정될 경우 제출한 요금제는 반드시 '15년 1월에 고객에게 판매하여야 함.
- 제출 양식

(단위 : 원)

요금제명	월 기본료	기본제공	초과 사용시		
		음성(분)	음성(초)	문자(건)	데이터(MB)

○ 2014. 2~7월 콜센터 실적

구분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평균
인입호							
응대호							
응답률(%)							

※ 최근 1년간 민원 처리 현황은 관계부처(미래부, 방통위, 한국소비자원)에 접수된 민원을 해당기관으로부터 확인하여 평가

9. 우체국알뜰폰 판매 활성화 방안 제출

- 각 사업자는 우체국알뜰폰 판매 활성화 방안을 1~2장 작성하여 제출

《유의사항》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으며, 지정된 날짜까지 미제출, 오기재, 누락 등은 위탁업체 선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.
- 제출된 사항에 대해 우정사업본부에서 심사할 수 있으며, 참가신청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.
- 업체 선정에 필요시 우정사업본부는 추가자료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음
- 공정하고 원활한 업체 선정에 저해되는 의사표시와 행위는 금지됨.
 - 언론사에 루머·익명성 제보, 국가기관 등에 로비 등은 공정한 업체선정에 방해될 수 있으므로 불가함에 유의
- 업체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의 동의 없이 일체 발설·누설할 수 없음.
- 상기사항 위반 시 참가자격이 박탈되고, 민·형사상 책임이 있음
- 신청서, 증빙자료 등은 9월15일 09:00부터 9월26일 18:00까지 도착하도록 우정사업본부 국내우편과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
- 문의 : 우정사업본부 국내우편과 창구수탁담당(02-2195-1224, 1278)

< 첨부2 >

우체국알뜰폰 수탁판매 계약서 주요내용[요약]

업무분담

- (우체국) “수탁자”는 “위탁자”의 요금제, 단말기를 소비자에게 설명·판매한 후 신청서 등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“위탁자”에게 송부
- (알뜰폰사) “위탁자”는 개통심사, 단말기 배송, 개통, 민원처리, 정산,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 등 “수탁자” 업무 외 모든 업무 수행

상품변경 주기

- 요금제 3개월, 단말기 1개월 (변경시 직원 교육자료 제작·배포)

계약기간 : 2016년 9월 30일까지

수탁판매 지원

- “위탁자”는 우체국에서 수탁판매를 위해 필요한 비품(판매대, 각종 홍보물, 교육교재, 상품안내장 등)을 설치하고 직원 교육 실시
 -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“위탁자” 부담임

판매대금 정산

- 정산기간 : 익월 15일 ~ 말일까지 정산
- “위탁자”는 유기적으로 정산할 수 있도록 전담직원 배치

민원 처리

- “수탁자”는 고객에게 상품을 안내하고 판매하며, 그 외 고객이 제기하는 각종 문의, 불만 등을 포함한 모든 민원은 “위탁자”가 처리하여야 함

□ 담보금 예치

- 수수료 2배 상당금액(5,000만 원)을 ‘현금담보금 예금증서’ 또는 ‘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’으로 제출

□ 계약해지 기준(기간 : 계약기간)

- 월 30~70건 이상 민원이 4회 이상 발생할 경우
- 월 수수료 정산 시 정확하지 않게 정산할 경우
- 판매개시 6개월 경과시부터 최저 판매기준(월 500건) 미달로 4회 이상 판매실적이 부진할 경우